

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0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2. 18.

우정욱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2. 25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3. 18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김원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·시행 및 빈집실태조사에 관한 조문 내용을 명확히 정립하고,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리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빈집의 활용”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빈집정비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 내용 명확화(안 제5조)
-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규정 신설(안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농어촌정비법」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7호
 - 예고기간: 2025. 2. 18.(화) ~ 2025. 2. 24.(월)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「농어촌정비법」에서 규정한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 내용을 명확히 정립하고,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2조) 용어의 정의
 - 빈집의 활용에 대해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.
- (안 제5조) 빈집정비계획의 수립·시행
 -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,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- (안 제7조) 빈집의 활용
 -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에 위해 그 대상 사업들을 명확히 규정함.
- (안 제9조) 지도·감독
 - 빈집의 활용·관리 및 빈집 정비를 위해 지원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과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, 빈집 실태조사, 빈집의 활용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주민의 복리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3. 18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